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47호로 2022년 1월 24일 고기관·오현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상호 존중”등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영등포구 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구체적인 상호 존중 행위(안 제5조)

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지원사항(안 제6조~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 20. ~ 1. 25.)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과 영등포구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여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재벌일가 갑질,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갑질’과 같은 이기적 의식과 행동, 상호 인격 침해 등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왔음.

이에 공공분야부터 시작하여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과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정비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앞장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와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조항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안 제5조는 상호 존중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

- 안 제6조에서는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해 캠페인, 공모전, 설문조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음.

숫자 11은 1=1을 상징하며, 상호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상호 존중과 관련한 세부 시책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청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상호 존중에 대한 주의 환기 등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보임.

○ 검토결과,

지금 우리 시대는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갑·을 관계, 적폐, 상호 인격침해, 성차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음.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 공무원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됨.